

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의연월일	2017. 5. .
발 의 자	양진오의원 외 5명

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양진오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연월일 : 2017. 5. .

발 의 자 : 양진오 · 김인배 · 김상조 · 김정곤 · 박교상
정근수 의원(6인)

1. 제안이유

가. 공공하수도의 사용료·점용료, 분뇨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, 원인자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 부과방식을 현실에 맞게 명문화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,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

나.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(2016년 7월)

2. 주요내용

가. 체납 가산금 부과방식 개선(안 제32조)

- 종전 : 가산금 3%(고정비율), 30만원 이상 증가산금 부과
- 개선 : 납기 경과 후 1개월 범위 내 가산금(3%)를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 및 30만원 이상 증가산금 규정 삭제

※ 산정식 : 가산금 = 미납요금 × (3/100) × (체납일수/월력일수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하수도법」,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공기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·점용료, 분뇨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, 원인자부담금등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되, 체납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산정식에 따라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.

$$\text{가산금} = \text{미납요금} \times (3/100) \times (\text{체납일수}/\text{월력일수})$$

제32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(가산금) ① 공공하수도의 <u>사용료 · 점용료, 분뇨수집 · 운 반 · 처리 수수료, 원인자부담금 등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 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1 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 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천분의 12에 상 당하는 증가산금을 징수한다.</u> <u>이 경우 증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 하지 못한다.</u> ② 제1항에 따른 증가산금은 체 납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 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 <u>다.</u>	제32조(가산금) ① 공공하수도의 <u>사용료 · 점용료, 분뇨수집 · 운 반 · 처리 수수료, 원인자부담금 등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 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 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 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 수하되, 체납일수가 1개월 이내 인 경우에는 다음 산정식에 따 라 가산금을 일할 계산하여 징 수한다.</u> <u>가산금 = 미납요금 × (3/100) ×</u> <u>(체납일수/월력일수)</u> <u><삭 제></u>

관계법령

□ 「하수도법」

제65조(사용료 등)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~ ④ 생략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136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② ~ ③ 생략

제146조(지방공기업의 설치·운영)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지방공기업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.

□ 「지방공기업법」

제22조(요금)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,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,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,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.

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재정수반요인

- 공공하수도의 사용료·점용료, 분뇨수집·운반·처리 수수료, 원인자 부담금 체납시 가산금을 일괄 3% 부과에서 체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고, 30만원 이상 증가산금 규정 삭제(안 제32조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가. 1년간 5만 3천여 건의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 부과 방식을 변경할 경우 세입 감소액을 추계한다.
- 나. 추계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으로 한다.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연간 세입액이 6천여만원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.

[표1] 연도별 세입 감소액

(단위:천 원)

구 분 \ 연 도	1차년도(6월)	2차년도	3차년도	합계
합 계	△ 25,400	△ 58,420	△ 67,182	△ 151,002
가산금	△ 8,950	△ 20,585	△ 23,672	△ 53,207
증가산금	△ 16,450	△ 37,835	△ 43,510	△ 97,795

4. 재원조달 방안 : 해당없음

5. 부대의견

- 가산금을 납부일자별 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 제고
- 세입 감소분은 하수도 요금 인상('16년에서 '20년까지 연도별 15% 인상)으로 충당될 것으로 기대

6. 작성자 : 업무과 이상두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1. 세입 감소 내역 (일할계산 방식으로 변경시)

※ 적용 예시: 당월분 10,000원을 납기 15일 후 납부했을 경우

- 기존(고정비율)

$$10,000\text{원(본세)} * 3\%(\text{가산금}) = 10,300\text{원}$$

- 변경(일할계산)

$$10,000\text{원(본세)} * 3\%(\text{가산금}) * 15/30(\text{체납일}) = 10,150\text{원}$$

- 가산금 감소액 : 150원